

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김영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,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변경(안 제8조제1항)
  - 안전관리를 위해할 경우,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 한 경우  
⇒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
⇒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- 시설의 원상복구 절차 변경(안 제10조제3항)
  - 변경한 시설을 방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  
⇒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-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(별지 제1호 서식)
  - 사용계획서, 작품 목록, 프로그램 ⇒ 사용계획서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, 시설의 원상복구 절차를 변경 및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